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

번호	멸실된(리모델링 허가 전) 합산배제 임대주택						⑤ 신축주택		
	① 소재지	② 사업 유형	③ 멸실일 (리모델링 허가일)	④ 최종 임차인			소재지	주택 유형	준공일
				퇴거일	성명 (명칭)	주민(법인) 등록번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새로운 주택의 임대기간에 합산 받기 위해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멸실(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② 사업 유형: 해당 주택을 준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의 유형("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 및 "리모델링")을 적습니다.
 - 가.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 나.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 다. 소규모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 라. 리모델링: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5. ③ 멸실일(리모델링허가일): 당초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멸실일.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을 적습니다.
 6. ④ 최종 임차인: 당초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사업계획의 승인)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임차인을 기준으로 퇴거일과 성명(명칭)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⑤ 신축주택: 당초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멸실에 따라 새로 취득할 주택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의 주택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가. 소재지: ① 소재지에 따라 적으며, 지번이 부여되기 전인 경우에는 예정 부여 지번을 적습니다.
 - 나. 주택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및 "오피스텔")를 적으며, 아파트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 다. 준공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게 될 예정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후 준공인가증을 받게 될 예정일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뒤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